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1. 2. 8. (월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장우철, 사무관 배운형 ·☎ (044) 201-4384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중앙일보 “지구지정 늦으면 2.4대책 우선 공급권 자격 완화” 기사 관련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'21. 2. 8.) >

- ◆ 지구지정 늦으면 2.4대책 우선 공급권 자격 완화한다
 - 우선공급권 자격기준 시점은 지난 4일 대책 발표일
 - 지구지정 전 소급적용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
 - 지구지정 늦은 사업장 대상 기준 보완키로

□ 정부가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우선 공급권 부여시점과 관련,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-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,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으며,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

 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배운형 사무관(☎ 044-201-43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